

	<h2>교목실규정</h2>	규정번호	3-7-1
		제정일자	2006.03.01
		개정일자	2014.03.01.
		개정차수	5차
		소관부서	교목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목실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기독교 정신으로 봉사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갖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임무) ① 학교 내의 신앙과 선교, 그리고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총장과 보직자들에게 조언자와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② 교직원의 신앙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학생 채플을 인도하며 기독교 관련 교과목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신앙 지도와 종교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④ 사회 종교 기관 및 지역 교회와의 연락과 유대를 가지고 대학 선교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제4조(조직) ① 교목실장은 교목실을 대표하며 교목실 전반을 관장한다.

② 교목은 교목실 행사와 대학 선교 실무를 담당한다.

③ 직원은 교목실 행정을 담당한다.

④ 교목실에 지역 교회에서 파송된 목회자(목사 또는 전도사)를 둘 수 있으며, 파송된 목회자는 교목실과 협력하여 대학 선교 활동을 돕는다.

제5조(선교위원회) ① 대학 선교의 활성화와 교직원의 신앙생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교위원회를 둔다.

② 선교위원회의 운영은 “선교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6조(집회) ① 월요예배는 교직원의 신앙 성숙을 위해 학기 중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② 학생 채플은 매주 실시하며, 학생들은 주 1회 해당 채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기독교 관련 동아리 지도) ① 교목실은 교내의 각종 기독교 관련 동아리를 지도 및 감독한다.

② 교목실은 기독교 관련 동아리의 교내외 행사를 지원한다.

제8조(상담자의 비밀보호 책임) 상담자는 상담을 통해 취득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9조(지도 교수제 활용) 모든 교수가 지도 대상 학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신앙 지도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